

# 구약논찬

제 17권 2호(통권 40집) 2011년 6월 30일

소 형근(남서울대)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 ..... 86  
본 연구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모세 시대와 요시야 시대에 단행된 개혁 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대하 19장 5-11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역사성을 논하기에는 시대착오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본문 안에 역대기적 색채의 흔적들이 나타남을 근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대하 19장 5-11절을 포로 이후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So, Hyeong Geun The Judicial Reform of Jehoshaphat ..... 86

## 여호사밧의 사법개혁<sup>1)</sup>

소 형근 | 남서울대

### 1. 서론

사법개혁이라 하면 그 동안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해 불신을 받아왔던 사법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사법제도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평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사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가 있고, 공평한 판결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만 공정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구약성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백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법개혁이 시행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구약성서에는 재판관의 불의한 재판이 자주 지적되었다. 고관들(고위 사림)이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해서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을 꺾전으로 흘리는 경우를 고발한다(사 1: 23). 또한 성문에서 재판을 하던 자가 올바르게 가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며(암 5: 10),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 재판하기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암 5: 12). 이러한 재판관의 불의와 불공정의 개선을 지적하며 구약성서는 재판관의 덕목을 소개한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1) 이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되어야 한다(출 18: 21). 또한 재판관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오직 공의만을 따라 재판해야 한다(신 16: 19-20). 재판관이 지녀야 할 덕목과 함께 사법개혁을 실시한 구약성서의 본문은 출 18장, 신 16장, 17장, 대하 19장이다. 정경 비평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출애굽기 본문(18장)과 신명기 본문(16장, 17장)은 모세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대하 19장은 기원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위의 사법개혁 본문들(출 18장, 신 16장, 17장, 대하 19장)을 문학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정경 비평적 관점을 뛰어 넘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의 진상을 알게 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출 18장 13-26절, 신 16장 18절, 17장 8-13절 그리고 역대기의 특별자료로 분류되는 대하 19장 5-11절에 대한 본문 분석을 통해 각 사법개혁의 특성을 다룰 것이며, 특별히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본문(대하 19: 5-11)을 연구를 통해 구약성서의 진정한 사법개혁과 그 역사성을 살피고자 한다.

## 2. 사법개혁 본문들의 문학적 분석들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개혁과 관련된 본문들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출 18장, 신 16장, 17장, 대하 19장이다. 이 본문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모세) 혹은 왕(여호사밧)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는 내용이며, 또한 지역 재판소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 설치와 관련되어 있다.

### 1) 출 18장 13-26절

출 18장 13-26절<sup>2)</sup>은 모세의 새로운 재판관<sup>3)</sup> 임명과 동시에 재판의 이원화를 다루고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2) 출 18장 13-26절과 신 1장 9-18절은 평행 본문이다. 신 1장 13절은 지혜적인 사상이 반영되었고, 또한 신 1장 15절에 나오는 법정에서 재판관(쇼페트)을 돕는 법정관리(쇼테르)는 구약성서에서 처음으로 요시야 시대(신 16: 18)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 1장 9-18절은 출 18장 13-26절을 기초하여 요시야 시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T. Veijola,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8*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2-28쪽.

3)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직업 재판관'이라 할 수 없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이다. 모세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 자들은 본래 '군대 지휘관들'이었으며 부업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다.

모습을 보면서 재판조직의 변화를 제안한다(21절). 이때 모세는 새로운 재판관들을 임명하는데 이들은 천부장(שָׂרֵי אֲלָפִים) 사례 알라핌), 백부장(שָׂרֵי מֵאוֹת) 사례 메오트), 오십부장(שָׂרֵי חֲמִשִּׁים) 사례 하밋섬), 십부장(שָׂרֵי עֶשְׂרִים) 사례 아사로트)이었다. 이들은 모두 군대 지휘관들인 ‘사람’(אִישׁ) 사람)이다.<sup>4)</sup> 이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본래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출애굽의 지도자였기에 제의 재판권과 비제의(= 세속) 재판권을 모두 지닐 수 있었다. 15절에 의하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이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라고 말한다. 15절은 제의 재판에 해당하는 본문이고, 16절은 비제의 재판과 관련된다. 따라서 출 18장 본문에는 아직 세분화 되지 않은 재판의 영역(혹은 재판권 행사)에 대한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법개혁을 통해 이들에게 재판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생겼다. 22절에 의하면 “큰 일”(כָּל־הַדָּבָר הַגָּדוֹל) 콜 하다바르 하카돌)은 모세가 직접 재판을 담당하고, “작은 일”(כָּל־הַדָּבָר הַקָּטָן) 콜 하다바르 하카톤)은 새로 임명된 자들(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담당한다. “작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카톤’(קָטָן 카톤)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to be insignificant or small)을 의미한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잘잘못을 알 수 있는 소송건을 말하거나, 판례가 있어 재판하기 쉬운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모세가 담당해야 할 재판은 “큰 일”이다. 이 “큰 일”이 무엇일까? 이 “큰 일”에 대해 26절이 알려준다. 모세가 재판해야 할 영역인 “큰 일”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일”(הַדָּבָר הַקָּשֶׁה) 하다바르 하카쉐)에 해당된다. 히브리어 형용사 ‘카쉐’(קָשֶׁה 카쉐)는 ‘어려운’(to be difficult), ‘힘든’(to be hard or severe)이라는 뜻으로 ‘판에 박히지 않은’, ‘복잡한’ 소송건들을 의미한다.<sup>5)</sup>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오늘날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것이 아닌, 재판관이 판결하기 난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급 재판소에서 상급 재판소로 소송건이 이관되었다. 출 18장 13-26절에 대해 크니림(R. Knierim)은

4) R. Knierim, “Exodus 18 und die Neuordnung der Mosäischen Gerichtsbarkeit,” ZAW 73 (1961), 168-171쪽.

5) J. I. Durham, 「출애굽기」 (손 석태/ 채 천식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426쪽.

대하 19장 5-11절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법제도의 원인론적 본문이라고 주장하고,<sup>6)</sup> 더햄(J. I. Durham)은 모세 시대에 시작되었던 재판조직이 기원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sup>7)</sup> 그러나 출 18장 13-26절을 대하 19장 5-11절의 원인론적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크니립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라우프너(A. Graupner)는 “출 18장 13-27절, 이스라엘에서 사법개혁의 원인론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출 18장 13-26절의 핵심은 재판 기관을 전제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여된 과중한 부담을 백성의 지도자들(כֹּהֲנִים 사림)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리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한다. 출 18장 13-26절 본문을 재판 조직에 대한 원인론적 본문으로 수용한다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이 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 나오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sup>8)</sup>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사법기능의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사법개혁이 이방인 이드로로부터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출 18장 13-26절은 재판 영역의 이원화를 목적하고 있으며, 하급 재판에서 상급 재판으로 소송을 이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임명된 자들은 대하 19장 5절에 나오는 직업 재판관(שֹׁפֵט שופेट)이 아닌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Funktionsträger)으로서 군대 지휘관들(מִלְחָמָה 사림)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쉽게 판별할 수 있거나, 이미 판례가 있어서 재판하기 쉬운 일들만을 담당했었다. 따라서 출 18장 13-26절의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과 대하 19장 5-11절에 나오는 재판관들과는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을 원인론적 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더햄(J. I. Durham)이 주장하는 모세 시대에 시작되었던 재판조직이 기원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해석 또한 문제가 있다. 모세 시대 이후 가나안 정착과 함께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은 유일하게 사사(שֹׁפֵט שופेट)만이 언급된다. 삿 4장 5절에 여성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리마와 벨엘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지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사사시대 사사를 광야시대 모세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왕조

6) R. Knierim, 윗글, 155-171쪽.

7) J. I. Durham, 윗글, 423-426쪽.

8) A. Graupner, “Exodus 18,13-27 - Ätiologie einer Justizreform in Israel?” in: S. Beyerle u. a. (Hg.), *Rechts und Ethos im Alten Testament - Gestalt und Wirkung*, FS. H. Seebas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11-26쪽.

초기에 이스라엘의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은 왕 자신이었다. 왕상 7장 7절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מִשְׁפָּט) 미쉬파트)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삼하 15장 2절 이하에서 압살롬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 사람에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아직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조 초기에는 사사들이나,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햄이 주장하는 출 18장 13-26절이 기원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출 18장 13-26절에 나타난 모세 시대의 사법개혁을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사한 상황을 찾다면 어느 시대일까? 구약성서 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법개혁을 찾을 수 없다. 즉,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군대 지휘관이 동시에 재판권을 소유하고 재판을 한 흔적이 구약성서 정경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출 18장 13-26절은 독특한 방식의 사법개혁인 셈이다.

## 2) 신 16장 18절

신 16장 18절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재판관을 임명하되 모든 성들마다(בְּכֹל שְׂעָרֵי) 베콜 쉐아레카) 두게 되고, 재판관 외에 관리들을 임명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סוֹפְרִים) 쏘프림)과 지도자들(שֹׁטְרִים) 쇼테림)<sup>10)</sup>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신 16: 18).

신 16장 18절은 이스라엘의 왕국시대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모든 성들마다”

9) 이 본문에 대한 비평적 관찰이 필요하다. 참고, G. F. Moore, *The book of Judges.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text*, (Leipzig: Hinrichs, 1900), 113쪽;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174쪽; M. Görg, *Richter* (NEBAT 7), (Würzburg: Echter, 1993), 27쪽; 소 형근, “구약성서에 나타난 재판관들: 역대하 19장 4-1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19집 (2005년 12월), 114-132쪽.

10) 개역개정 성경에서 히브리어 ‘쇼테림’을 ‘지도자’라고 번역하였으나 ‘지도자’라는 표현보다 ‘관리’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잘 맞는다. ‘쇼테림’은 재판관(쇼페림)을 돕는 공무원 ‘관리’이기 때문이다. 참고, U. Rütterswörden,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Eine Studie zu šr und vergleichbaren Begriffen* (BWANT 117), (Stuttgart: Kohlhammer, 1985).

재판관을 두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중앙 정부에서 도시의 성문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의미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새화된 성(城)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아하로니(Y. Aharoni)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벽은 처음으로 기원전 10-9 세기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sup>11)</sup>고 말한다.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형성된 이후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고대 도시민들의 성벽 건축은 왕조의 지속과 안녕에 필수 불가결했던 것이다.<sup>12)</sup> 고대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도 요새화된 성이 다윗 시대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성벽과 성문 건축에 사용되는 엄청난 비용은 왕조시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된 성에는 성문(מַשְׁעָר) 사아르)이 있고 이 성문은 그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sup>13)</sup> 그 기능들 중 하나가 재판의 기능인 성문재판이다. 신 16장 18절에서는 성문재판에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새로운(?) 재판관(שֹׁפֵט)을 임명하는 보도를 해 주고 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재판관들이 존재했었다.

족장시대와 같은 분절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어른인 가장(*pater familias*)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이 시대는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관청이 부재하던 시대이고, 성문화된 법에 의해 통제받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소송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시대였다.<sup>14)</sup> 이후 사사시대는 사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사사의 본업이 재판(judgment)은 아니었지만<sup>15)</sup> 구약성서 사사기에는 사사가 재판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해준다. 여선지 겸 사사였던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벤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שֹׁפֵט) 미쉬파트)을 받았다(삿 4: 5).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조시대가 시작되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이

11) Y. Aharoni, “The Date of Casemate Walls in Judah and Israel and Their Purpose,” *BASOR* 154 (1959), 36쪽; 참고, H. Weippert, *Palästina in vorhellenistischer Zeit* (Vorderasien 2,1), (München: Beck, 1988), 427-440쪽.  
 12) Z. Herzog, “Fortifications,” *ABD* II, (New York: Doubleday, 1992), 844쪽.  
 13) 소 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 『구약논단』 제 18집 (2005년 8월), 171-192쪽.  
 14) K. Eder, *Die Entstehung staatlich organisiert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6), 159쪽; E. Otto, “Zur Stellung der Frau in den ältesten Rechtstexten des Alten Testaments (Ex 20,14; 22:15f.) – wieder die hermeneutische Naivität im Umgang mit dem Alten Testament,” *ZEE* 26 (1982), 285-286쪽.  
 15) 삿 4장 5절을 제외하고 사사가 재판을 담당했다는 언급이 사사기에 없다. 따라서 사사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전쟁용사’로서의 역할이 주된 임무였던 것이다.

직접 재판을 담당했지만(다윗-솔로몬 시대), 왕이 모든 백성의 소송을 담당하기에는 시간적, 체력적 한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은 이후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제의 재판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비제의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와 ‘방백’을 재판관으로 두게 된다. 니어(H Niehr)는 삼상 2장 25절(“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을 국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에 의한 제의 재판으로 본다.<sup>16)</sup> 국가 이전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의 재판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 제사장이 지역 성소들에 임명되었던 것은(삿 17장과 18장) 제사장들에 의한 제의 재판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제사장의 제의 재판은 왕조 초기부터 포로기와 포로 이후까지 지속된다.<sup>18)</sup>

제의 재판과는 달리 비제의 재판은 장로와 방백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왕상 21장 1-16절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 북 이스라엘 왕 이합의 부인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들(זְקֵנִים 저케님)과 귀족들(גֵּבּוּרִים 호림)<sup>19)</sup>에게 편지를 보낸다(8절). 이 편지대로 장로와 귀족들은 불량자(בְּנֵי־בְנֵי־בְנֵי 버네 벌리아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후 성문재판<sup>20)</sup>을 통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확정한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기원전 9세기 장로들이 재판관으로서 기능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기원전 8세기 본문인 사 1장 23절은 히브리어 ‘사르’(שָׂר)에 의한 재판을 언급한다. “네 고관들(שָׂרֵי־צָדִיק 사라이크)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16) H. Niehr, *Rechtsprech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Gerichtsorganisation im Alten Testament* (SBS 13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7), 55쪽.

17) 소 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과 재판관들」 (한국구약학총서 15),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93쪽.

18) 크뤼제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직의 주된 기능은 ‘재판의 교육기능’과 ‘토라 교육’(미 3: 11; 사 2: 3; 호 4: 4-6; 신 31: 9-13)이라고 보았다.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Kaiser, 1992), 118쪽.

19) ‘호르’(חֹר)의 복수형인 ‘호림’(חֹרִים)은 방백들처럼 백성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이며(스 9: 2), 호림은 때론 방백들(חֹרִים 사림)과 동의어로 사용된 듯하다.

20) 성문재판의 배경적 모습이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의 글인 암 5장 10절(“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과 12절(“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에도 나타난다.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개역개정에서 “고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שׂר)는 ‘군대 지휘관’이다. 이 ‘사르’는 구약성서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재판의 기능을 담당했던 자들로 나타난다. 출 18장 21절과 25절에서는 이 ‘사르’가 모세를 도와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로 나타나며, 이후 호 13장 10절도 ‘사르’가 재판관의 기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니어(H. Niehr)는 요시야 이전 시대까지 방백들(בַּיָּד שֹׁפֵט)이 왕의 재판을 수행했다고 말한다.<sup>21)</sup> 이처럼 분절사회였던 족장시대부터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인 기원전 8세기까지 다양한 재판관들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어 왔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재판관들(가장, 사사, 왕, 제사장, 방백, 장로)은 직업적인 재판을 담당하던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주된 업무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Funktionsträger)으로 활동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직업 재판관으로서 ‘쇼페트’(שׁפֵּט)는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회 안에 나타났던 것일까? 학자들은 이 시기를 요시야 시대로 보고 있다.<sup>22)</sup> 특별히 신 16장 18절은 모든 도시의 성문에 직업 재판관인 ‘쇼페탐’(שׁפֵּטִים)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재판관 임명에 ‘쇼페탐’ 외에 ‘쇼테림’(שׁוֹטְרִים)이 등장한다. 이 ‘쇼테르’(שׁוֹטֵר)는 구약성서 안에서 ‘군사 작전 수행자’의 맥락에서(신 1: 15; 20: 5, 8, 9; 수 1: 10; 3: 2), ‘재판의 영역’의 맥락(신 16: 18)에서, 그리고 ‘일반 행정 수행’의 맥락(신 29: 9; 31: 28; 수 8: 33; 23: 2; 24: 1)에서 나타난다.<sup>23)</sup> 그러나 이 ‘쇼테르’의 특징은 이 ‘쇼테르’가 항상 ‘종속적인 기능인’으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이다. 신 16장 18절에 직업 재판관 ‘쇼페탐’이 임명되고 동시에 ‘쇼테림’이 언급된 것에 대해 마홀쯔(G. Ch. Macholz)는 ‘쇼테림’이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하위직 관리로서 활동했다고 본다.<sup>24)</sup> 바인펠트(M. Weinfeld)는 고대 근동에서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재판관들에게 기록을 위한 비서(secretary)와 행정 처벌

21) H. Niehr, “שׂר,” ThWAT VIII, (Stuttgart: Kohlhammer, 1995), 422쪽.

22) H. Niehr, 윗글(1995), 422쪽; U. Rütterswörden,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13쪽. 대하 19장 5-11절에 나오는 기원전 9세기 여호사밧 시대의 재판관(שׁוֹפֵטִים 쇼페탐) 임명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비평적 관찰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23) K. -D. Schunck, “שׁוֹטֵר,”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93), 1257쪽.

24) G. Ch. Macholz, “Zur Geschichte der Justizorganisation in Juda,” ZAW 84 (1972), 334쪽.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경관(constable)과 법정에서 일할 안내원(messenger 혹은 attendant)이 필요했다고 말한다.<sup>25)</sup> 따라서 신 16장 18절에 언급된 ‘쇼테르’는 ‘쇼페트’를 도와 재판에서 비서와 경관과 안내원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쇼테르’가 재판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신 16장 18절은 새로운 직업 재판관 ‘쇼페팀’이 각 성읍의 성문 재판을 담당하는 자로 임명되었고, 이 ‘쇼페팀’을 도와 ‘쇼테팀’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신 16장 18절의 사법개혁은 이전 시대보다 재판이나 법정의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다.

### 3) 신 17장 8-13절

신 16장 18절이 모든 도시의 성문에 지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 17장 8절 이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상급 재판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는 기능어라기보다 썩방이 팽팽하게 대답하는 경우(신 19: 17)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로 소송이 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신 17장 8절(“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에는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to be too hard for thee for judgment)이라는 전체를 달고 있다. 이 “어려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며, 동사 ‘팔라’(פָּלַל)의 니팔형(*niph'al*)이 사용되고 있다. ‘팔라’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한다.<sup>27)</sup> 따라서 판결의 한계에 부딪힌 소송에 대해 신 17장 9절은 “레위 사람 제사장”(לְלוֹיִם הַכֹּהֲנִים 하코하님 하레비임)과 당시 “재판관”(שֹׁפֵט)에게 나가 물으라고 말한다.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운 상급 재판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제의 재판’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비제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쇼페트’가 동시에 상주하도록 임명되었다. 제사장과 재판관은 신 17장 12절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된다. 이 예루살

25) M. Weinfeld, “Judges and Officers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ISO VII* (1977), 84쪽.

26) 이 태훈 들,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시리즈 5),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47쪽.

27) R. Albertz, “פָּלַל,” *THAT II*, (München: Chr. Kaiser, 1984), 415쪽.

렘 상급 재판소는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다. 만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는다면, 즉,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다(신 17: 12).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על פי הוֹתָרָה 알 피 하토라) 판결을 해야 한다. 곧, 토라에 근거한 판결을 말한다. 그래야 모든 이들이 이 판결에 순복할 수 있게 된다.

신 16장 18절이 지역 성문 재판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재판관(쇼페트)을 임명하고 신 17장 8절 이하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의 설치와 새로운 재판관(제사장과 쇼페트)의 임명을 말하는데 이러한 재판소의 운용(management)이나 재판관의 임명이 대하 19장 5-11절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 4) 대하 19장 5-1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סֹפֵט 쇼페트)을 임명한다(대하 19: 5). 역대기 본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9세기가 된다. 기원전 9세기 유다의 모든 성읍마다 ‘쇼페트’, 즉, 직업 재판관으로서 ‘쇼페트’를 두었다는 보다는 구약성서에서 유일한 보도다. 또한 대하 19장 8절에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לֵוִי 레비임)과 “제사장들”(כֹּהֲנִים 코하님)과 “이스라엘 족장들”(שֵׁרָרִים 라셰 하아보트) 중에서 “아웨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도록 임명한다. 8절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은 11절에서 그들의 재판 영역을 나눈다. 즉, “아웨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담당하고, 레위 사람들은 관리로 임명된다. 대하 19장 5-11절은 앞선 본문이었던 신 16장 18절과 신 17장 8절 이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신 16장 18절이 지역 재판소인 성문에 ‘쇼페트’를 임명했다면, 대하 19장 5절 역시 지역 재판소에 ‘쇼페트’를 임명한다. 신 17장 8절 이하가 예루살렘 상급재판소 설치와 재판관 임명을 말한다면, 대하 19장 8절은 재판하기 어려운 소송을 예루살렘 재판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설치된 재판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의 개념이 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또한 대하 19장 8절에 임명된 재판관들은 신

17장 9절과 12절처럼 제사장들과 일반인(쇼페트)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신 16장과 17장의 요시아의 사법개혁이 우선일까? 대하 19장 5-11절의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이 우선일까? 아니면 여호사밧의 개혁과 요시아의 개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비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하 19장 5-11절을 커티스(E. L. Curtis)가 문학 비평적 방법으로 분석한 이후 폰 라트(G. von Rad), 갈링(K. Galling), 뤼터스뵈르덴(U. Rüterswörden), 노퍼스(G. N. Knoppers)에 의해 더 섬세한 문학 비평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이 말하는 대하 19장 5-11절은 신 16장과 17장(혹은 신 1장)의 영향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린다.<sup>29)</sup> 이러한 결론은 벨하우젠(J. Wellhausen)이 말한 대하 19장 5-11절이 여호사밧(יְהוֹשָׁפָט)이라는 이름에서 기인된 포로 이후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sup>30)</sup> 그러나 대하 19장 5-11절에 대한 역사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많다(P. R. Ackroyd; R. J. Coggins; J. Becker; R. Mosis; P. Welten; G. Ch. Macholz; H. G. M. Williamson, 정석규<sup>31)</sup> 등). 크뤼제만(F. Crüsemann)은 대하 19장 5-11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본문은 역대기의 작품이 아니라, 더 오래된 전승에서 기인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sup>32)</sup> 첫째, 대하 19장 10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자하르’(זָחַר, to instruct)의 히필형(*hiphil*)과 10절에서 2회 사용된 ‘아샤’(אָשָׁא, to be guilty)은 역대기 본문에서는 대하 19장 10절을 제외하고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역대기 사가의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특별 자료에서 온 것이다. 둘째, 11절에 나오는

28) 크뤼제만은 대하 19장 10절을 “형제들”이 특정한 법률 사건을 예루살렘 상급재판소에 이송하는 이해로 해석하고 있다. 프랑크 크뤼제만, 『토라: 구약성서 법전의 신학과 사회사』 (김 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189쪽.

29) E. L. Curti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Chronicles* (ICC XXII), (Edinburgh: T&T Clark, 1976); G. von Rad, *Das Geschichtsbild des chronistischen Werkes* (BWANT 54), (Stuttgart: Kohlhammer, 1930); K. Galling,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U. Rüterswörden, *윗글*, (1987); G. N. Knoppers, “Jehoshaphat's judiciary and the Scroll of YHWH's Torah,” *JBL* 113/1(1994), 59-80쪽.

30)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Reimer, <sup>6</sup>1905), 186-189쪽.

31) 정 석규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본문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이 역사적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고대 이집트의 하렘합의 법령과 비교하는 논문을 썼던 적이 있다. 참고, 정 석규, “하렘합(Haremhab)과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제 12집 (2002년 5월), 53-81쪽.

32) 윗글, 186쪽.

“야웨에게 속한 모든 일”과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의 구분은 역대기 신학과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11절에 나오는 스바다의 호칭인 “유다 지파의 어른”(עַבְדֵי יְהוָה לְבֵית־יְהוָה ; 한나기드 레베트 예후다)이라는 표현이 만약 역대기적 표현이었다면 ‘하나님의 집의 어른’(עַבְדֵי יְהוָה לְבֵית־הָאֱלֹהִים) 한나기드 레베트 하엘로힘)으로 기록되었어야 했다(비교, 대하 9: 11; 대하 31: 13; 대하 35: 8). 넷째, 대하 32장의 구조를 보면 3-4절에서 언급된 보도가 30a절에서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하 17장 7-9절에는 여호사밧이 방백들(שָׂרֵי־אֲשֵׁרֵי)과 레위 사람들(לְוִיִּם)과 제사장들(כֹּהֲנִים)로 하여금 야웨의 율법책(סֵפֶר וְתוֹרַת)을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대하 19장 5-11절에 반복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하 19장 5-11절은 역대기의 더 오래된 전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sup>33)</sup>

크뤼제만의 대하 19장 5-11절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그밖에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에 대한 역사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기원전 9세기는 이스라엘 사법체계가 세워질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전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대하 19: 5-11)이 비역사적 보도임을 몇 가지 관찰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첫째, 여호사밧의 사법개혁과 같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왜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에는 침묵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왕상 22장 1-28절과 대하 18장 1-27절(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룸), 왕상 22장 29-40절과 대하 18장 28-34절(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왕상 22장 41-50절과 대하 20장 31절부터 21장 1절(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체하였으며 다시 스 행[行] 배를 선척했으나 이 배가 하나님의 진노로 예시온케벨에서 파선한 이야기)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보도하는 여호사밧 이야기의 유사본문이다. 대하 17장과 19장 본문은 신명기 역사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의 특별자료인 셈이다. 위의 유사본문에는 여호사밧이 야웨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으나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평가를 내린다(왕상 22: 43; 비교, 대하 20: 33). 이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인 듯하지만 신명기 역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점은 긍정이 아닌 셈이다. 이에 비해 역대기 사가의 여호사밧에 대한 보도는 더 가혹하

33) 윗글, 183-196쪽.

다. 대하 20장 33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보도한다. 그렇다면 역대기의 특별 자료인 대하 17장과 19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 대하 17장은 방백들(סֹפְרֵי 사림)과 레위 사람들(לְוִיִּים 레비임)과 제사장들(כֹּהֲנִים 코하님)이 율법책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된다. 구약성서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담당했다(미 3: 11; 렘 18: 18; 겔 7: 26 등). 그러나 포로 이후가 되면서 제사장의 율법 교육을 레위 사람들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대하 17: 9; 35: 3; 느 8: 9). 그리고 ‘야웨의 율법책’(סֵפֶר יְהוָה וְתֹרַת יְהוָה 세페르 토라트 야웨) 혹은 ‘율법책’(סֵפֶר תּוֹרָה 세페르 토라)이라는 표현은 신명기나 신명기 역사서 혹은 포로 이후 문서인 역대기 역사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신 28: 61; 29: 20; 30: 10; 31: 26; 수 8: 31; 24: 26; 왕하 14: 6; 22: 8; 대하 17: 9; 34: 14, 15; 느 8: 1; 느 9: 3). 특별히 대하 17장 9절에 나오는 ‘야웨의 율법책’이라는 표현은 대하 34장 14절과 느 9장 3절과 정확히 일치를 이룬다. 따라서 대하 17장 7-9절은 기원전 9세기를 반영하기 보다는 포로 이후 시대를 반영하는 본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하 19장 8절은 재판관의 출신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으로 언급한다. 그런데 포로 이전 시대 재판관으로 활동했던 자들 가운데 ‘레위 사람’에 대한 예가 구약성서에는 없다. 물론 대하 19장 11절에 ‘레위 사람은 ‘관리’(שָׂרֵיפִים 쇼테림)로서 활동하지만 레위 사람이 법정에서 관리로 활동한다는 보도 역시 구약성서의 포로 이전 본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하 19장 5-11절의 본문이 기원전 9세기 여호사밧 시대의 본문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기원전 9세기에 사법제도의 이원화가 실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기원전 9세기에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이 단행되었다면 기원전 8세기에도 이러한 사법전통이 유다 사회 안에 계승됐어야 했다. 대하 19장 5절의 보도처럼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직업 재판관으로서 ‘쇼페팀’(שֹׁפֵטִים)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보도하는 기원전 8세기 재판관들은 ‘방백’(סֹפְרֵי 사림, 사 1: 23)과 ‘장로’(זִקְנֵי 제케님, 왕상 21: 8, 11)와 ‘제사장’(כֹּהֲנִים 코하님, 호 5: 1; 사 28: 7)이었다.<sup>34)</sup> 직업 재판관 ‘쇼페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원전 8세기 구약성서 본문에서 ‘쇼페팀’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

34) 소 형근, 윗글 (2010), 92-98쪽.

한 직업 재판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구약성서 자료에 근거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셋째, 대하 19장 11절에는 스바다가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스바다에 대한 호칭이다. 11절에는 스바다를 “유다 지파의 어른”(הַגִּבּוֹר לְבֵית הַיְהוָה) 한나기드 레베트 예후다)이라 부르고 있다. 이 “어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기드’(נָגִיד)다. 구약성서에서 ‘나기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기드’로 불려진 첫 번째 사람은 사울(Saul)이었다(삼상 9: 16). 이후 ‘나기드’는 다윗(삼상 25: 30; 삼하 5:2; 6: 21; 7: 8 등), 솔로몬(왕상 1: 35 등), 여로보암(왕상 14: 7), 아사(왕상 16: 2), 히스기야(왕하 20: 5)에게 부여된 호칭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원전 8세기까지 ‘나기드’는 ‘왕’(מֶלֶךְ)이 될 사람이거나, 왕이었던 사람에게만 사용되던 용어였다. 왕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던 용어가 ‘나기드’였다. 그런데 이 ‘나기드’가 왕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후 사용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램 20장 1절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었다. 이 바스홀은 왕이 아닌 제사장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 본문은 제사장 바스홀을 가리켜 ‘나기드’라 불렀다. 기원전 7세기 이후 ‘군대 지휘관’(대상 12: 28[한 27]; 13: 1; 27: 4, 16; 대하 11: 11; 32: 2), 왕실을 지키는 ‘궁내 대신’(대하 28: 7), 이방의 ‘군대장’(대하 32: 21),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느 11: 11)들이 ‘나기드’로 불려졌다.<sup>35)</sup> 종합해 보면 기원전 9세기 여호사밧 시대에 사법개혁이 단행되었다고 한다면 대하 19장 11절에 나오는 재판관 스바다는 ‘행정 관리’인데 이 스바다에게 “유다 지파의 어른”, 즉, ‘나기드’라 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anachronic) 표현이 된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기원전 9세기에 ‘나기드’라 불려진 사람은 오직 ‘왕’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의 역사성은 벨하우젠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35) 소 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 성서에 나타난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제 29집 (2008년 9월), 145-162쪽.

### 3. 결론

구약성서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모세 시대와 요시야 시대에 단행된 개혁 밖에 없다. 출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사법개혁은 최고 지도자로서 모세와 군대 지휘관으로서 '사르가' 담당한 재판관으로 두 리더쉽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나오는 구약성서의 본문이 없기 때문에 출 18장의 역사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하 19장 5-11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역사성을 논하기에는 시대착오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또한 역대기적 색채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주장한 바처럼 대하 19장 5-11절은 여호사밧(יְהוֹשָׁפָט = 여호와와는 재판관이시다)이라는 이름의 특별성 때문에 기인된 포로 이후의 신물로 보는 것<sup>36)</sup>이 타당하다. 출 18장 13-26절을 대하 19장 5-11절의 원인론(etiology)으로 보려는 시도 역시 거부된다. 이 두 본문들의 유사성 보다 오히려 차이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신 16장 18절과 신 17장 8-13절은 니어(H. Niehr)의 주장처럼 요시야 시대의 본문으로 새로운 직업 재판관을 임명하는 본문이다. 신명기의 두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던 역사적 사법개혁이었다. 이 개혁을 통해 직업 재판관 '쇼페트'가 임명되고, 지역 재판소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4. 참고문헌

- 소 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 『구약논단』 제 18집 (2005년 8월), 171-192쪽  
\_\_\_\_\_, "구약성서에 나타난 재판관들: 역대하 19장 4-1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19집 (2005년 12월), 114-132쪽.  
\_\_\_\_\_, "노라(Nora) 비문과 구약 성서에 나타난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제 29집 (2008년 9월), 145-162쪽.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재판관들』 (한국구약학총서 15),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이 태훈 등,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시리즈 5),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정 석규, "하렘합(Haremhab)과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제 12 (2002년 5월), 53-81쪽.

36) J. Wellhausen, 윗글, 186쪽.

- 프랑크 크뤼제만, 『토라: 구약성서 법전의 신학과 사회사』 (김 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Aharoni, Y., "The Date of Casemate Walls in Judah and Israel and Their Purpose," *BASOR* 154 (1959), 35-39쪽.
- Albertz, R., "פְּלֵא," *THAT* II, (München: Chr. Kaiser, 1984), 413-420쪽.
- Crüsemann, F.,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Kaiser, 1992).
- Curtis, E. 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Chronicles* (ICC XXII), (Edinburgh: T & T Clark, 31976).
- Durham, J. I., 「출애굽기」 (손 석태/ 채 천식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 Eder, K., *Die Entstehung staatlich organisiert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6).
- Galling, K.,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 Görg, M., *Richter* (NEB.AT 7), (Würzburg: Echter, 1993).
- Graupner, A., "Exodus 18,13-27 - Ätiologie einer Justizreform in Israel?" in: S. Beyerle u. a. (Hg.), *Rechts und Ethos im Alten Testament - Gestalt und Wirkung*, FS. H. Seebas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11-26쪽.
- Hertzberg, H. W.,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 Herzog, Z., "Fortifications," *ABD* II, (New York: Doubleday, 1992), 844-852쪽.
- Knierim, R., "Exodus 18 und die Neuordnung der Mosaischen Gerichtsbarkeit," *ZAW* 73 (1961), 146-171쪽.
- Knoppers, G. N., "Jehoshaphat's judiciary and the Scroll of YHWH's Torah," *JBL* 113/1(1994), 59-80쪽.
- Macholz, G. Ch., "Zur Geschichte der Justizorganisation in Juda," *ZAW* 84 (1972), 324-340쪽.
- Moore, G. F., *The book of Judges.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text*, (Leipzig: Hinrichs, 1900).
- Niehr, H., *Rechtsprech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Gerichtsorganisation im Alten Testament* (SBS 13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7).
- \_\_\_\_\_, "שֹׁפֵט," *ThWAT* VIII, (Stuttgart: Kohlhammer, 1995), 408-428쪽.
- Otto, E., "Zur Stellung der Frau in den ältesten Rechtstexten des Alten Testaments (Ex 20,14; 22:15f.) - wieder die hermeneutische Naivität im Umgang mit dem Alten Testament," *ZEE* 26 (1982), 279-305쪽.
- von Rad, G., *Das Geschichtsbild des chronistischen Werkes* (BWANT 54), (Stuttgart: Kohlhammer, 1930).

- Rüterswörden, U.,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Eine Studie zu šr und vergleichbaren Begriffen* (BWANT 117), (Stuttgart: Kohlhammer, 1985).
- \_\_\_\_\_,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 Schunck, K. -D., “שטר,”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93), 1255–1258쪽.
- Veijola, T.,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8*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Weinfeld, M., “Judges and Officers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ISO VII* (1977), 65–88쪽.
- Weippert, H., *Palästina in vorhellenistischer Zeit* (Vorderasien 2,1), (München: Beck, 1988), 427–440쪽.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Reimer, 1905).

## 검색어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재판관(쇼페트)  
 나기드  
 성문재판  
 예루살렘 상급재판소

# The Judicial Reform of Jehoshaphat

Hyeong 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Seit der kritischen Untersuchung von Wellhausen über die Justizreform des Josaphat in 2 Ch 19,5–11 haben verschiedene Alttestamentler über dieses Thema gearbeitet. Knierim hat versucht, den Text von Ex 18,13–26 als Ätiologie der Justizreform zu verstehen. Dieses These Knierims, dass Ex 18,13–26 die Justizreform des Josaphat im Blick habe, wird neuerdings von Graupner abgelehnt, weil V 21b und V 25b in Ex 18,13–26 jünger als die Gliederung in Tausendschaften usw. in Dt 1 seien und es für 2 Ch 19,5–11 nicht um die Rechtsprechung der Heerbannführer gehe, sondern um die Einsetzung der Richter in allen festen Städten Judas und Jerusalem.

Albright und Weinfeld haben versucht, die historische Möglichkeit der Justizreform des Josaphat durch die altorientalischen Hintergründe zu beweisen. Jedoch finden sich keine Belege des Alten Testaments über die Einsetzung und Tätigkeit der offiziellen Richter von Seiten der Zentralregierung in 10.–8. Jh. v. Chr. außer 2 Ch 19,5–11. Trotzdem ist es einleuchtend, dass das Gericht im Tor auch im 8. Jh. vielleicht durch die nichtstaatliche Institution gehalten wurde (Jes 29,21; Am 5,10. 12.15), aber niemand weiß, wer im 8. Jh. im Tor gerichtet hat.

Ferner hat Crüsemann durch seine Arbeit (*Die Tora*[1992]) versucht, 2 Ch 19,5–11 nicht als die chronistische Arbeit in der nachexilischen Zeit, sondern als die chronistische Sonderheit, d.h. die ältere Überlieferung zu erkennen.

Aber die mangelnde Historizität der Justizreform des Josaphat hat sich durch

die einigen Belege bestätigt. Die selbstständige Rechtsprechung der כהנים wie 2 Ch 19,8.11 erwähnt, ist im 9. Jh. im Alten Testament nicht vorgegeben, stattdessen war die hauptsächliche Tätigkeit der Priester auf die kultische Rechtsprechung, die Lehrfunktion des Gerichts und die Lehre der יהוה beschränkt (Mi 3,11; Jes 2,3; Hos 4,4ff.; Dt 31,9; Ez 44,23; 2 Ch 17,8–9). Zudem waren die Leviten in der Alten Testament als die Richter vor der exilischen Zeit nicht tätig. Außerdem ist die Rechtsprechung der שפטים, die von der Zentralregierung eingesetzt wurden, erst im 7. Jh. im Alten Testament belegt, und der נגיד in 2 Ch 19,11 ist anachronistisch. Der נ יד war ein König in der Zeit von Josaphat.

### Keywords

Judicial Reform of Jehoshaphat

Judges(Shofet)

Nagid, gate justice

Jerusalem superior court

■투고일: 2011년 4월 15일

■심사일: 2011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8일